

# 司書職의 專門性 考察

崔 成 眞

成均館大學校圖書館學科副教授

## 1. 서 언

전문직은 본래 노동의 분업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간이 가혹한 자연환경 속에서 효과적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생활자료를 획득하자니 분업이 필요했던 것이다. 문화가 발달하고 사회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분업은 더욱 세분화 되었다. 어떤 것은 종사자에게 특별한 지식을 요하고, 그 지식을 실제문제 해결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요하게 되었으며, 또 그런 지식과 능력을 얻는데 상당기간의 훈련과정을 거쳐야 했다. 즉 전문직이 생겨난 것이다. 전문직은 특별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소수 엘리트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러한 지식과 기술을 얻기위해서는 오랜 준비가 필요하였다. 그들이 담당할 기능은 사회전체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그래서 전문직 종사자에게 특별한 사회적 신분과 권리와 보수로 예우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누구나 할 수 있으면 전문직을 갖고 싶어 하게 되었고, 또 어떤 직업 그룹이나 할 수 있으면 그들의 직업을 전문직의 수준으로 올려보려는 소원을 갖게 되었다.

1951년에 버틀러(Pierce Butler)는 「사서직이 전문직이라는 데 이의를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sup>1)</sup>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단정은 실은 그 자체가 사서직이 비전문직이라는 주장의 존재를 반증한 것이었다. 일찌기 1936년에 리이스 같은 이는 사서직의 전문성을 회의하고 당시 한창 벌어지고 있던 사서직의 전문성 시비에 일체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sup>2)</sup> 오늘날도 리이스의 후예는 도서관 안팎에 상당수 있는줄 안다. 특히 전문직 개념이 아직도 일반에게 생소한 우리나라에서는 도서관의 전문성을 말하면 도시 무슨 소린지 납득이 안가는 모양이다. 「당신네 뿐이냐? 우리도 전문직이다」하는 관청 일반직원의 말을 듣고 벌렸던 입이 달려지지 않는 때도 있다.

사서직은 전문직이라는 버틀러의 가설을 재입증하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먼저 전문직이란 무엇이며 그 일반적 성격과 판단기준이 어떤것 인지를 밝히고 사서직 내용이 그것들에 어느정도 합치 되는지, 또 사

서직이 전문직으로 서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보완하여 더욱 완전한 전문직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인지를 논하려고 한다.

이 주제의 선행문헌으로 1970년 「도서관학」 제1집에 게재된 김 중한씨의 논문 「도서관 관계 전문직과 관계 학문의 재규정」이 있다. 이것은 사서직 내용을 전문직의 일반적 기준에 일일이 비추어 고찰하지는 않았다. 「도서관」지의 1974년 5월호는 「사서직제도의 개선 방안」이라는 특집을 실었다. 이 특집호에는 이택준, 한상완, 김기배 제씨의 논문이 나왔는데 이 논문들이 사서직의 전문성에 대하여 상당히 깊이 있는 분석을 시도하고 있으나 제도개선 방안을 추출하는데 중점이 기울어져 저자가 본고를 가지고 이 주제 토론에 참여할 측면은 그대로 남아 있음을 본다. 이밖에도 수편 있으나 대부분이 사서직은 전문직이라는 전제 아래 전개된 글들이다. 그러나 과연 사서직은 전문직인가? 본고는 지금까지의 전제에 대한 한 논리적 고찰이다.

## 2. 전문직의 성격

영어사전은 전문직 개념을 분명히 하려는 사람에게 적지 않은 혼란을 안겨준다. 가령 옥스포드 영어사전을 보면 전문직이란 뜻의 “Profession” 아래의 정의 가운데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도둑배의 활동」까지 포함하고 있다. 오랫동안 갖가지 뜻으로 쓰이던 “Profession”이라는 말이 서구사회에서 현대적 개념으로 고정된 것은 홀렉스너<sup>3)</sup>가 사회사업이 전문직이냐 아니냐를 밝히려고 “Profession”의 특성을 자세히 분석한 때부터의 일일것이다. 그는, 가끔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단서를 붙여서 전문직을 판단하는 여섯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이 기준에 의하면 의학, 법학, 공

1) Pierce Butler, “Librarianship as a Profession”, Library Journal, XXI (October 1951), 238.

2) Ernest J. Reece, The Curriculum in Library School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36), p.26; cited from Jesse H. Shera, The Foundations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New York: Wiley, 1972), p. 73.

3) Abraham Flexner, “Is Social Work a Profession?” School and Society, I (June 26, 1915); cited from Jesse H. Shera, op. cit., p. 68.

학, 문학, 미술, 음악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일반이 의심할 여지 없는 완전한 전문적이라는 것이다<sup>4)</sup>

1950년대에는 전문직 개념이 세계적으로 상당히 보편화 되었다. 당시의 대표적 개념 정의의 예로 「코간」의 것을 들 수 있다. 그는 전문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전문직이란 어떤 학문분야의 이론적 체계를 이해하고 그 이해에서 일어나오는 능력을 기초로 행하는 직업이다. 이러한 이해와 능력은 중대한 인간의 신재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용되는 것이며 오직 기초연구의 결과로 생기는 지식과 인간의 간단한 지혜와 경험의 누적으로부터 그 내용과 방법이 수정되는 것이다. 전문직은 중대한 인간요구를 충족시키되 의뢰자에 대한 이타적(利他的) 봉사로서 그 첫째가는 윤리강령으로 삼는다」

코간의 전문직 개념에는 분명히 세가지 개념이 함축되어 있다. 첫째 다른 직업과 구분되는 어떤 직업, 둘째 같은 직업인들의 협회조직, 셋째 면허증 소지의 직업 개념이 그것이다. 전문직의 한계는 실제적 목적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에서 펴낸 직업명 사전에 가장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다.

「전문직이란 중사자의 높은 수준의 정신활동을 요하는 직업으로, 복잡한 인간 활동의 이론면과 실제면에 관련된 직업들이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직업들을 올바르게 실행하려면 장기간에 걸친 학교교육이나 또는 그와 동등한 실력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성격의 경험, 또는 그러한 교육과 경험의 결합을 요한다.

전형적 전문직의 보기는 의사, 변호사, 건축사, 기계기술자, 화학자, 물리학자, 천문학자, 편집자, 배우, 사서, 음악가의 직업들이다. 이들중 기계공학자, 건축사, 천문학자<sup>5)</sup> 의사는 기본적으로, 체계화된 이론분야의 발달과 실제 응용을 추구하며, 한편 편집자, 배우, 사서의 직업은 전문적 성격이라고 간주되는 능력을 요하나 어떤 한 학문분야의 지식만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직업그룹 안에서 이런 종류의 전문직 정의 문제가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다. 아마도 그 주된 이유는 한 직업이 전문직이란 딱지가 붙으면 상당한 잇점이 있다고 믿는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사회에서나 의사, 변호사, 성직자하면 그 이름만으로도 존경과 순종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넉넉한 생활을 하며, 이들이 그러한 일을 할 자격을 얻기 위해 오랫동안 어려운 공부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을 받으며, 사람들이 어떤 문제(고통)를 만나면 그것을 가장 잘 해결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들 밖에 없다고 믿고 모든 것을 맡기며, 이들의 판단을 전적으로 믿으며, 요구하는 대로 사례금을 내는 것이니 전문직은 더 바랄 나위 없는 직업임에 틀림없고 누구나 그런 직업 그룹에 속하길 소망한다 해서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런 이유로해서 대학에

전문교육과정의 늘어나고 전문직 협회라는 이름의 기관이 점점 늘어나, 본래의 전문직마저 많은 사이비 전문직들 속에 묻혀버려 그 이미지가 흐려지고 있는 작금이다.

전문직은 두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사회적 보호, 신분, 혜택 등 중사자 입장에서의 관습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이 사회의 눈에 비친 객관적 이미지이다. 양자는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다. 사회적 신분이라는 것이 보통 전문직에 대한 일반의 존경과 그 공헌에 대한 사의(謝意)에서 생겨나는 것이므로 오히려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서들이 사회적 측면을 경시하고 그들의 협회를 통해 얻을 혜택에만 관심을 기울이며, 또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직무만을 담당하겠대도 소용없는 일이다. 사서직의 전문성을 그러한 혜택과 직무에만 기초하여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전문직이 가지는 일반적 요건을 사서직 내용이 다 갖추고 있는가하는 관점에서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이 이해되고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우선 전문직의 일반적 판단기준을 분명히 세울 필요가 있다.

### 3. 전문직의 판단 기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홀렉스너의 여섯가지 기준<sup>6)</sup>을 좀더 자세히 살펴본다. 그것은 1) 전문직은 기본적으로 실행자 개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지적 활동이며, 2) 실행자의 지식과 기술은 학문을 통해 얻는 것이며, 3) 그 지식과 기술은 실제의 목적을 이루는데 쓰이며, 4) 전문직은 저마다 비전(秘傳)되는 특유한 교육의 원칙과 방법을 가지며, 5) 자율적 통제 및 발전을 가지며, 6) 그 활동은 이타적 동기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이 기준은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 개정하여 쓸 필요가 있다는 단서가 붙어 발표되었다. 이런 종류의 기준으로는 아마도 최초의 것일 홀렉스너의 이 기준이 1915년에 발표된 후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조금씩 새로운 기준을 내놓았다. 저자의 견해로서는 아마도 지금까지 나온 전문직 판단기준의 논의 가운데 가장 또

4) Ibid.

5) Morris L. Cogan, "The Problem of Defining a Profession,"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Ethical Standards and Professional Conduct, ed. by Benson Y. Landis, vol. 297 (January 1955), p. 108; cited from Jesse H. Shera, op. cit., p. 69.

6) Dictionary of Occupational Titles (2d ed.;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9), vol. 2, p. 1; cited from Jesse H. Shera, op. cit., pp. 70-71.

7) Abraham Flexner, op. cit., p. 904.

괄적이며 정곡을 찌른 것은 경영이 전문직임을 주장한 앤드루즈의 논문<sup>8)</sup>일 것이다. 앤드루즈는 전문 직의 다섯가지 주요 판단기준을 세운 다음, 경영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것이 기준 하나 하나에 어느정도로 맞는지를 대조해 보았다. 그는 또한 경영의 내용에서 점차 전문성이 높아가고 있는 부분을 분석하고 끝으로 그러한 부분에서의 전문성의 발전이 교육자와 실행자의 어떠한 행동과 태도에 달려있는가를 지적하였다. 앤드루즈의 기준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1) 지식, 즉 이미 입증된 지식이나 연구를 통해 계속 증보되고 완성될 지식 또는 이론체계.
- 2) 응용력, 즉 실제에 그 지식을 응용하는 능력.
- 3) 사회적 책임, 즉 전문직 자체를 발전시키고 그것으로 대사회관계(對社會關係)를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행하는 일.
- 4) 자율적 통제, 즉 제반 효율적 실행기준의 설정 및 기준 위반자에 대한 통제.
- 5) 사회적 인정, 즉 그 직업이 상기한 네가지 기준을 가짐으로써 사회로부터 받는 존경과 인정.

#### 4. 사서직의 전문성

전문직 여부를 판단할 첫째 기준은 비교적(秘敎的) 지식과 이론의 체계가 있으며 그것이 조사연구 활동에 의해 계속 증보되고 완성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또 그것이 그 직업활동의 지적 근거가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 요소를 별로 요하지 않는 직업은 준전문직이나, 기능직, 일반사무직으로 구별되는 것이다. 사서직의 경우 그 직무가 지식의 생산, 보존, 전달, 발전, 교육활동 등에 관여하는 것이므로 지식과의 밀접한 관련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사서직의 지적 기초가 되는 도서관학은 1887년에 미국과 독일에서 처음으로 대학교육의 한 과정으로 도입되기 훨씬 전부터 꾸준히 진화 성장하여 왔다.

6세기초에 이미 로마의 캐시도오르스(Cassiodorus)는 수도원 도서관 직원들이 어떻게해서 지식과 학문의 전통을 후대에 이어 줄 것인가에 대한 저술을 내어 이를 그의 직원들에게 가르쳤으며<sup>9)</sup>, 도서관학의 시조라 불리는 프랑스의 노오레(Gabriel Naudé)는 1627년에, 도서관의 역사적 발전을 인식하고, 도서관 설치의 이념, 운영, 자료 수집, 축적, 처리기술, 건축등 도서관의 거의 모든 분야 문제점을 총괄적으로 파악하여 독자적 견해를 총론적으로 표현한 그의 불후의 명저 「도서관 설치에 관한 조언」(Advis pour dresser une bibliothèque)을 발표 하였다<sup>10)</sup>. 도서관학이 여러 세기 동안의 경험적 기술(經驗的記述)의 수준에서 도약하여

한 과학으로의 체계화 내지 비과학, 체계적, 실용적 일반 개념으로서의 체계화가 시도된 것은 1930년대 초기의 랑가나단<sup>11)</sup>과 버틀러<sup>12)</sup>의 저술에서 비롯되었다. 그 후 비약적 도서관학 발전의 과정을 일일이 예시할 지면이 없으나 오늘 날 구미 여러 나라에서 도서관학 교육과정은 신학, 법학, 의학 등 대표적 전문직의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대학원 과정으로 설치되어있고, 또 1891년에 벨빌·듀이에 의해 올리비에에 있던 뉴욕주립 도서관학교에 박사학위 수여규정이 제정된 이래<sup>13)</sup>, 1926년에 미국중서부의 명문 시카고대학 도서관학 대학원에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었으며<sup>14)</sup>, 오늘에는 미국의 15개 대학<sup>15)</sup>을 비롯해서 세계 여러나라 대학에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었다는 사실은 사서직의 지적 기초인 도서관학이 높은 수준의 이론체제로 성장하였음을 입증하는 충분한 자료가 된다고 믿어진다. 우리나라에서도 1974년에 처음으로 성균관대학교 도서관학과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현재 3명의 학생이 여기에서 연구중이다.

여러나라에서 대학의 학부과정을 마친 후에 시작하여 때로는 박사학위과정까지 나아가는 도서관전문교육의 내용이 무엇이며 각 과정에서 배우는 수준은 어떤 것인가를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현행 도서관 전문교육의 방법, 전문직이 한 요소로서 갖추어야 할 입증된 이론 체계와, 연구를 통한 그 이론의 진화 잠재력을 사서직이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데는 위에서 다소 광범하게 늘어 놓은 도서관 전문교육의 발자취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때때로 도서관 전문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대학 졸업자가 도서관에 들어와 어깨 너머로 보고 익힌 기술

8) Kenneth R. Andrews, "Toward Professionalism in Business Management," Harvard Business Review vol. 47 (March-April 1969), 49~60.

9) Svend Dahl, History of the Book (2d ed.; Metuchen N. J.: Scarecrow, 1968), pp. 41-22.

10) 椎名六郎, "圖書館における Universalismus의 形成, 圖書館學會年報, VIII (1961), 15-21.

11) Shiyali R.Ranganathan, The Five Laws of Library Science (Madras: The Madras Library Association, 1931)

12) Pierce Butler, An Introduction to Library Scien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3)

13) Ray Trautman, A History of the School of Library Service,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4), p. 29.

14) Jesse H. Shera, The Foundations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New York: Wiley, 1972), Chapter 12, The Doctoral Program and Research, pp. 398-421.

15) David H. Eyman, comp., Doctoral Dissertations in Library Science (Ann Arbor, Mich.: Xerox University Microfilms, 1973), v.

로써 분류, 편목등 도서관전문직이 담당하는 부서를 훌륭하게 감당하는 예가 있다는 말을 듣는다. 사서직의 지적 근거로서의 도서관학의 필요를 회의하는 소리다. 그러나 이것은 극히 피상적 관찰결과나 사서직의 내용에 대한 무지의 표현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어깨 넘어로 배울 수 있는 것은 고작 특정도서관의 특정직무에 관련된 현행규칙과 예외사항 뿐이다. 그들은 도서관 현상에 관한 일반개념의 체계를 가지지 못하므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지역사회의 요구와 상황에 대처하고, 문제가 일어날 때 자신있게 이를 정의, 검토 해결하고, 바람직하게 도서관 운용의 방향을 조정할 능력과 같은 보다 근본적 자질은 없다. 몇가지 전문기능을 흉내낼 수 있다하여 그런 사람을 전문직 자격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 사서직의 자격증과 채용자격 제한 문제가 일어나나 이에 대해서는 후에 상술한다.

전문직의 물결 기준은 그 직업의 기초가 되는 지식과 이론체계를 실제문제 해결에 있어 올바르게 응용할 능력이 있느냐하는 것이다. 즉 일반원리와 현장 실무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하는 것이다. 이 점은 도서관학에 관한 한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오히려 흠이 될 정도이다. 오늘 도서관 교육은 도서관현상의 사회학적 배경을 비롯해 통신공학, 시스템 이론, 컴퓨터시스템, 논리학, 확률이론, 통계학, 대수학 등의 응용분야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도서관 현장 요구에 따른, 즉 실천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그 내용의 중심을 이룬 거의 직업교육의 한계 안에 머무르고 있으며, 도서관 교육자들은 케시어도모러스, 노오데, 듀이와 마찬가지로 현장의 요구와 문제에 항시 귀를 기울이고 있다. 듀이의 「도서관 경영학교」 시대의 초기 도서관학 내용은 전적으로 도서관실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었으며, 그 후 도서관 자체의 발전, 관중의 분화, 봉사범위의 확대등이 도서관학 내용의 재구성을 촉구하여 상당한 변형을 초래하기는 했으나 근 한 세기가 지난 오늘에도 도서관학의 네 분야, 즉 관리, 자료조직, 참고 및 서지, 자료선택을 기간분야로 분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도서관학의 원리는 사서직에서의 응용과 밀착된 전계여서 다른 어떤 전문직에서 보더라도 이론의 응용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도서관 학과가 대학도서관 건물 안에 위치하고 또 도서관학과 교수와 도서관실무자간의 교류가 비교적 무난한 것도 다 이 사실을 밑받침해주는 것이라 본다.

전문직의 셋째 기준은 그 직업이 사회에 대한 봉사 책임을 가지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직업활동 내용을 발전 완성시켜 대사회 공헌도를 높일 수 있는 자

체능력을 가지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에 대한 봉사」라할 때 「봉사」의 의미는 이타적 동기의 실행을 함축한다. 아무도 사업가의 직업을 전문직이라하지 않는다. 그것이 이윤을 기본 동기로 삼기때문이다. 전문직 종사자는 때로는 자기 이해보다 의뢰자의 이해를 우선시켜야 한다. 사서직은 문헌을 통해 사회구성원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성립시켜 주는 활동이다. 오늘 날과 같이 개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주로 문헌에 의존하고, 따라서 문헌이 범람하게된 사회에서는 문헌(저자)과 이용자를 연결시켜주는 문헌전문가의 봉사가 더욱 절실하게 요망되는 것이다. 사서직이 없다면 과거(死者)와 현재(生者)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바랄 수 없을 것이며 문화의 전승, 사회 각분야의 기능 유지, 협조 같은 것도 바랄 수 없을 것이다. 사서직의 대사회봉사는, 특히 현대와 같은 복잡한 사회구조 속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며, 그 중요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전문직의 사회에 대한 봉사책임이란 구체적으로 의뢰자에 대한 봉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의뢰자와의 관계는 어떤 전문직 종사자에게나 그의 직업활동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다. 의뢰자가 곧 그의 존재이유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의사의 경우는 환자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변호사의 경우는 법적 피해자에 대해 그렇다.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전문직에 종사하는 교수나 사서는 그들의 봉사대상에 대하여 역시 책임을 가진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사서는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책임을 가지는 것이다. 여기서 책임이란 의뢰자에 대한 봉사를 의미한다고 하였지만 의뢰자란 또 무엇인가? 의뢰자란 개인의 위기(危機)를 말하는 것이다. 위기란 다시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말해 개인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고통이며, 해소를 기대하여 전문직 종사자 앞으로 들고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는 의사나 변호사를 찾는 의뢰자의 경우는 명백하다. 성직자를 찾는 신도의 경우도 그렇다. 그들은 영적 위기를 가진 것이며 교수를 찾는 학생은 학습과정에서, 사서를 찾는 이용자는 필요한 문헌 입수 과정에서 각각 위기를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전문직의 본질은 사회구성원의 개인적 위기를 해소하는 능력과 인도적 선의라고 할 수 있다.

본래 전문직활동은 의뢰자 개인과의 관계이지만 이 관계는 현대의 사회활동의 조직화 경향과 전문직 활동의 관료제화 경향으로 인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의뢰자에 대한 봉사라는 궁극의 목적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상적이고 분명한 관계는 역시 의뢰자가 직접 대면하여 전문직 종사자에게 호소하는 것일 것이다. 전문직 종사자는 자신의 교

육과 경험과 전문지식에 따라 의뢰자에게 그가 옳다고 믿는 바 충고, 서어비스 또는 처방을 제공한다. 여기 의뢰자의 신념이나 기대 같은 것이 전문적 판단과정에서 작용하지 못함은 물론이다. 의뢰자가 받은 전문적 충고, 서어비스, 처방을 따르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전문적 밖의 사람들에 의해 비판이나 논의의 꺼리가 되지는 않는다. 그 문제에 관한 한 그 사회에서는 그가 가장 잘 아는 사람, 즉 전문적 종사자이기 때문이다.

전문적 의뢰자에 대한 봉사책임과 관련하여 사서와 이용자간 관계의 밀접도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서들은 공공기관의 조직안에 소속되어 그의 전문직을 실행하게 되므로 어떤 부서를 맡는가에 따라 대이용자 관계는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말해, 의사나 변호사의 그것에는 비교될 수 없는 허술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료선택자, 분류자, 편목자 등 기술업무를 맡고 있는 사서들은 그들의 임무 수행중에 이용자(의뢰자)의 요구(위기)와 편의를 모색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용자의 직접 호소에 대한 응답이 아니고 간접적 관념적 기준에 의한 판단일 것이다. 이 정도의 관계를 가지고서는 사실상 전문적의 구비요건으로서의 의뢰자 관계라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어린이 독서실, 학술잡지실, 주제별 전문자료실 등 이른바 이용자 봉사업무를 맡고 있는 사서들의 대이용자 관계는 직접적이며 개인적인 것이다. 가령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독서실을 맡은 사서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는 어린이 자료의 전문가요, 어린이의 독서 및 발달심리를 아는 사람으로 그를 찾아오는 어린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부지부식간에 그들의 독서요구를 조정하여 모험담 일변도에서 점차 교육적으로 더 바람직한 내용의 책으로 흥미가 옮겨지도록 지도하는 직무를 가진 사람이다. 종합대학도서관의 주제별 전문자료실을 맡은 사람, 즉 주제전문 사서는 그가 맡은 자료실의 주제분야를 대학에서 전공 또는 부전공한 사람으로 해당분야의 원자료뿐 아니라 서지색인 목록 등 이차문헌, 그 분야 조사연구 방법까지 정통하여, 학기말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몰려오는 대학원 학생들, 과목이수를 마치고 연구주제를 받은 후 허둥대는 논문 준비자들에게 있어 주제전문 사서는 환자의 의사나 피해자의 변호사와 다를 없는 존재인 것이다.

이용자와의 관계는 사서들이 속한 관료체제에 따라서도 크게 좌우된다. 공식조직 속에서 활동하는 전문직이면 다 마찬가지지만 사서는 특히 그의 활동과정에 전문직으로서 요구되는 것과 도서관 직원으로 명령체통에서 받는 요구 사이의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전문적 종사자치고 자기 일을 타인이 간섭케 하고, 대이용자봉

사에 있어 타인의 기준과 윤리강령에 입각해 판단코자 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전문직과 자율적 판단의 관계는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이해되어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문적 종사자들은 그들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관료체제의 원한 행사에 불만을 표시하고 저항한다. 그들의 활동방법이나 결과는 상사가 아닌 동료들과 전문적협회에 의해 평가되고 통제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 자율성의 특권은 공공기관에 속한 전문적 종사자들이 다 정도차는 있으나 어느정도 사회적 이해 아래 향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의사들은 어떤 기관에 고용되건 그들의 전문적 실행(환자 치료 기타) 과정에서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며 자율적으로 행동한다. 그런데 도서관 안에서 사서직은 참고 사서등 몇 부서를 제외하고는 이 자율성의 인정을 별로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여러 사람이 일하는 도서관 안에 질서와 통제의 필요가 있고, 그것을 위해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대해 직무수행에 있어 복종을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 필요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전문적 수행과정에 관리층으로부터의 압력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더 많은 문의사항을 처리하고, 더 많은 이용자가 봉사를 받도록 하려는 한계에 그치고 전문적의 자율성을 위축하거나 해하는 종류의 것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전문적의 넷째 기준은 전문적 그룹이 자율적 통제, 즉 제반 효율적 실행기준의 설정 및 기준 위반자에 대한 통제 기능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그러한 기능은 전문적 협회에 의해 대부분 수행되는 것이다. 전문적 협회라면 일반적으로 적정규모, 작업조건 개선, 집단계약 등과 관련해서 생각하게 된다. 그러한 사항들이 전문적협회의 관심사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전문적의 요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전문적의 요건과 관련해서 전문적 협회를 생각할 때 그 가장 주요한 기능은 자율적 통제기능이다.

협회의 통제기능은 구체적으로 회원들의 실행기준과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준수케하고, 자격증 발급권<sup>16)</sup>을 통해 자격 미달자의 침입을 막음으로 행사된다. 자격증의 여러 문제점을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한가지 명백한 사실은 합법적 자격증 획득이 곧 전문적의 성공적 수행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윤리강령 문제도 마찬가지로 복잡하지만 회원들의 자율성 보호와 회원들간의 기강 확립에 이 보다 나은 대안이 아직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사서자격증의 의미는 규정된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해 그 증서를 주어 사회가 받을 봉사의 질적 보증을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사서

16) 우리나라에서는 이 권한이 정부의 감독부처에 속한다.

직의 봉사가 사회적으로 중요시 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전문직 종사자들은 전문직 단체에 대한 관계가 소속기관에 대한 관계와 거의 같은 정도로 충실한 것이 보통이다. 사서직의 경우도 그러한 병립적인 충성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사서들의 전문직 단체인 도서관협회는 사서직의 목표와 이상을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조직으로 직업단체기능과 학술단체기능의 양면성을 가진다. 협회의 전문위원회가 후자를 대표하나 전자에 비해 약한 기능인 것이 보통이다. 그러한 불균형때문에 따로 학술단체를 가지는 예가 있다. 우리나라에 도서관협회가 있고 별도로 도서관학회가 있는 것은 그 한 예이다.

도서관협회의 전문위원회전 독립적인 도서관학회전 사서직이 전문직으로서 자체의 조사연구 기능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이 일반 기능직이나 다름 것이 없다. 한국도서관협회 안에 전문위원회가 있고, 또 이와는 별도로 한국도서관학회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사서들이 스스로 연구자라고 생각하고, 계속 전문지식과 이론을 탐구하며, 또 그럴 의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문직의 요소로서 첫번째로 든 것이 그 직업활동의 근거가 되는 지식과 이론 체계요, 그 이론은 계속적 연구를 통해 증보 완성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서직이 전문직이란 지위를 확보하려면 그 지적 근거가 되는 도서관학의 존재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도서관학이 계속 연구되고 발전되어야 하며 그렇게해서 더욱 완성된 새 지식이 이용자에 대한 봉사실무에 지체없이 응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서들은 누구나 끊임없이 도서관학을 연구하고 그 연구 결과를 동료들 사이에 효과적으로 알리는 학회조직이 필요하다.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언제나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것이 전문직의 자율적 통제기능이다. 건반적 협회기능의 강화, 윤리강령의 선포, 그 강령 위반회원에 대한 통제 수단의 설정등이 끊임없이 검토되나 문제는 계속 남는 것 같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내용에 위배되는 의사들의 행동이 때때로 신문기사화하고 소위 뒷골목의 돌팔이 의사가 여전히 성업중 임은 의학협회의 자율적 통제기능이 부실한 증거일 것이다. 변호사들이 부정한 수단으로 판사 검사 또는 동료변호사들과 접촉하고, 의뢰자로부터 과도한 사례금을 요구한다는 말은 들리나 그런 사람들이 협회로부터 회원자격을 박탈당하고 전문직에서 추방되었다는 말이 거의 들리지 않음은 변호사들의 전문적 또한 자율적 통제기능이 그러한을 말하는 것이 아닌지?

사서들의 자율적 통제기능은 더욱 미약하다. 도서관협회의 노력으로 사서직의 자격기준이 도서관관계 법규에 명시되었으나 도서관에 여전히 무자격자가 들어

오고 있으며, 미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관리」 선언 「독서자유 선언」 등 부분적 관념적 윤리강령이 제정되었으나 위반회원에 대한 강력한 통제수단이 마련되지 않아 자율적 통제 기능으로서는 불완전하다 할 수 있다. 전문직의 자율적 통제는 사서직을 포함한 모든 전문직이 더욱 완전하게 사회적 수임을 다하기 위해 검토 고안해야 할 앞으로의 과제라고 본다.

전문직의 다섯째 기준은 사회의 인정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즉 그 직업이 위에서 든 네가지 기준에 맞음으로써 사회가 존경을 표하고 전문직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전문직이 사회구성원들에게 베푸는 인도주의적 활동이 귀하고 고마워서 사회는 그 종사자에게 상응하는 물질적 보수와 신분적 예우를 주고 싶은 것이다. 말하자면 전문직의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반응은 전문직의 수혜자(受惠者) 마음에서 일어나는 주관적 사의(謝意)의 총화이나 사서직 편으로부터의 홍보활동이 어느정도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본래 홍보활동이란 단순한 광고나 선전과는 다른 것으로 가령 도서관의 예를 들면 사서가 하는 일은 무엇이며 도서관이 지역사회에 주는 것은 무엇인가등 도서관 봉사활동의 전모를 봉사대상이나, 기타 관련 인사 또는 기관들에게 증감없이 있는 그대로 알려 그들의 지지를 획득하려는 활동이다. 그러므로 사서직에 대한 사회의 이미지는 그 봉사가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지나 홍보활동의 성과차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 사서직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은 지역에 따라 큰 차가 있는 듯하다. 그러한 차를 만드는 요인은 여러가지 있겠으나 사서직을 준비하는 교육과정의 수준이 그 하나일 것이다. 미국에서는 사서가 되려면 대학원 과정에서 수학해야하나 우리나라에서는 학부과정의 수학으로 족하다. 그러므로 미국의 사서와 우리나라 사서를 보는 사회의 눈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 일 것이다. 더욱 중요한 요인은 아마도 전문사서와 비전문직 도서관직원을 갈라보지 못하는 사회의 눈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서보조원들도 같은 「사서」란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그렇게 몰아서 부른 사서들의 일을 누가 전문직으로 인식할 것인가?

사회는 병원이 필요불가결한 것이라 생각하고 의사직도 그렇다고 믿는다. 또 학교가 필요불가결한 것이라 생각하고 교사직도 그렇다고 본다. 그러나 도서관은 필요불가결한 것이라 믿으나 사서직도 그렇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이유는 사서들이 도서관 안에서 자기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보조자들이 하는 일을 분명히 구분지어 주지못한때, 즉 도서관의 전문직

과 비전문직의 경계가 사회의 눈에는 모호한데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여기에도 도서관에 있어서 홍보활동의 중요성이 다시 제기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 인정」 기준은 지역적 문제이다. 한 나라에서는 인정이 명백한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못한 수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에서의 인정 정도는 어떠한가? 물론 그러한 것을 측정하거나 타와 비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서관하면 대부분이 공공도서관을 연상하는데 그것이 현재 가장 생기없는 관종(館種)이고<sup>17)</sup>,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전문직사서와 비전문직직원의 외형적 식별이 어렵고, 도서관 전문교육의 역사가 짧고,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 개념이 도입된 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개념이고, 현재 도서관 전문교육이 주로 대학 학부수준에서 행해지고 있고, 우리나라 도서관이 현대적 관리 개념을 도입한 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도 홍보활동이 부진하다는 등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으로 그 인정 정도가 낮은 것 만은 분명하다. 꾸준한 봉사개선 및 확대 홍보활동의 강화, 시간의 경과가 점차 현재의 인정도를 높여 갈 것이라 본다.

### 5. 도서관 전문교육의 문제점

사서직이 확고한 전문직의 기반 위에 서려면 사서직에 들어오기 전에 이런 저런 공식적 자격증을 획득해야 한다는 기준 제정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것 같다. 그러한 자격이나 학위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전문적 교육과 훈련의 내용이 합당하고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늘 되풀이 되는 말이지만 현행 도서관전문교육은 많은 약점을 지니고 있다. 물론 기초학문 과정과 전문교육 과정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시인한다. 후자는 전자에 비해 이론과 기술의 실제적 응용면에 더 치중할 수 밖에 없으며 순전히 철학적 연구로 일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행 도서관학과 교과과정처럼 구실점을 잃고 상호 유리된 단편적 도서관 실무기술이나 원칙의 습득이 도서관 전문직의 지적 기초를 구축하고, 장차 각양각색 도서관 문제에 직면하여 전문적 의사결정을 짓는데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의문이다. 도서관학이 사서직의 지적 기초를 이루는데 의미가 있다면 번디가 지적한 대로<sup>18)</sup> 그것이 사서직의 본질과 관련하여 무엇을, 왜, 그렇게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도서관학은 사무적이고, 기술적(記述的)이고, 절차와 방법치중의 수준에서 도약하여 아이디어, 이슈, 이론, 개념중심의 학문수준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믿는다. “how”에서

“why”로 “how to”에서 “what for”로 관심을 옮겨야 하며 기술(記述)과 실무세칙으로 학문의 본령을 대체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행 도서관 교육은 자체의 체계적 약점을 자각하고 도서관실무의 분야별 특정 요구와 영합하여 그 충족에 열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통의 원리 즉 도서관 철학을 중심으로 결합해야 할 사서직의 영역을 분야별 또는 관종별로 분렬시키고만 느낌이다. 도큐멘테이션, 특수도서관, 최근의 정보학이 일치된 전례는 아니지만 사서직과의 연결을 부정하며<sup>19)</sup>, 관종별 기술 및 관리법을 별도로 과목으로 하여 가르침으로 같은 사서직 안에서 공공도서관, 교육도서관, 전문도서관이 다소간에 각기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는데 이것이 그러한 도서관교육의 경향에 기인하지 않는가 생각된다. 이러한 관념적 분화는 사서들의 그릇된 인식 형성이나, 체제있는 전문이론 정립의 실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국가적, 세계적 문헌정보시스템 창조에도 큰 장애요소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 6. 결 언

전문성이란 어떤 직업의 타고 난 천부의 특성이 아닌 것은 명백하다. 그것은 봉사의 내용과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 진화를 통해 개발되는 것이다. 직업 그룹의 구성원 개인들이 모두 이 점을 인식하고 발전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그 직업의 전문성이 확립될 희망은 없는 것이다.

사서직이 아직 의사나 변호사의 그것처럼 의문의 여지없는 전문직으로 확고하게 섰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다소 부족이 있다해도 그 지적 기초가 되는 도서관학이 이론체계를 정비하였고, 그 이론을 도서관 실무에 응용하는 능력이 전수(傳授)되고 있으며, 이타적 동기의 사회적 봉사가 분명하며, 협회와 학회기능을 통해 자율적 통제력을 발휘하며, 사서직의 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정도가 높아가고 있어 전문직의 기본적 요건은 다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요건들이 현재 다 충족하다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자율적 통제기능과 사회적 인정도가 약하나 그 충실화는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모든 사서들과 도서관 교육자들의 금후의 과제라 할 것이다.

17) 崔成眞, “圖書館法中公共圖書館의 目的에 대한 批判的 考察,” 한국비블리아, 第2輯(1974), pp. 132-177.

18) Mary Lee Bundy and Paul Wasserman, “Professionalism Reconsidered,”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XXIX (January 1968), p. 20.

19) Jesse H. Shera, “Of Librarianship, Documentation and Information Science,” Unesco Bulletin for Libraries, XXII(March-April 1968), 70-77.